갑작스러운 위기상황

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세요!

주소득자의 사망, 중한 질병·부상, 회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
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로 요청



지원 대상

▣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

▸ 위기사유: 주소득자 사망 · 가출 · 구금 등 소득상실, 중한 질병 또는 부상,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

※ 세부 요건은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문의

문의 및 지원요청, 지원 대상 신고

▣ 거주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

▣ 보건복지 상담센터(24시간 국번없이 129)

지원 기준

▣ 소득기준

▸ 긴급복지지원(보건복지부)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(1인 192만원, 4인 487만원 이하)

▸ 차상위긴급지원(강원도):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(1인 217만원, 4인 552만원 이하) ※ 예산 소진시까지

▣ 재산기준: 중소도시 152백만원,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
▣ 금융재산기준: 1인 856만원, 4인 1,249만원 이하

※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

지원 내용

▣ 생계지원: 1인 월78만원, 4인 월199만원(최대 3개월)

▣ 의료지원: 300만원 이내(퇴원 전 요청 필수)

▣ 기타지원: 주거, 시설이용, 교육,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

보건복지부

강원특별자치도